

의안번호	제264호
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

2024. 3. 5.

##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
예 산 군 수



#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264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3. 5.

제 출 자 : 예산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(2017. 9. 26.)이후 개최 실적이 없으며,
- 기능이 유사한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예산군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와 예산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「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폐지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 【붙임 1】
- 예산조치: 해당없음

○ 기 타

- 규제심사: 해당없음
- 입법예고: 2024. 1. 12. ~ 2024. 2. 1. **【20일간】**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**【붙임 2】**
- 성별영향평가분석: 해당없음

예산군 조례 제 호

## **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**

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폐지 조례안 전문]

###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(일부개정) 2023.10.30 조례 제286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
2.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
3.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·제보,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
4.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
5.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
6. 재난 발생 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,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
7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부군수

2.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예산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가 위촉하는 사람

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. 다만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

2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, 단체·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

3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(운영)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평상시 :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
2. 재난 발생시 :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

제6조(위원장)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1.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
2.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
3.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

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10.30.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부칙<제2386호, 2017.9.2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60호, 2023.10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·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·운영된 위원회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④⑩ (생략)

④⑩ 「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「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「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2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

## 【붙임1】 관계법령

###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**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**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중앙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역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【붙임 2】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**

**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해당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상기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사항 없음

**4. 작성자: 예산군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김명주**

**담당자 현황** [산업건설국장 최진권, 안전관리과장 김명주, 안전관리팀장 인태웅, 담당자 김태진 ☎ 339-7754]